

안전한 도시철도, 편리한 교통서비스



서울교통공사

수신자 경영감사처장
(경유)

제목 소송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규정(안) 부패영향평가 실시 의뢰

1. 관련근거

- 가. 법무처-1831('17.9.20) 「소송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규정(안) 보고」
- 나. 사규관리규정 제13조(부패영향평가의 실시)

2. 소송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규정(안)의 부패유발요인 분석·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패영향평가 실시를 의뢰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주요 개정내용

- 중요한 소송 및 화해 대상금액 조정(20억원→30억원)
- 소송대리인 위임보수 지급기준 변경
- 소송심의회 위원을 본부장급에서 처장급으로 변경

나. 세부내용 : 불임 참조

붙 임 : 소송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규정(안) 1부. 끝.

법 무 처 장

부장 김문규

처장 09/20
엄익철

협조자

시행 법무처-1847 (2017.09.20.)

접수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/http://www.seoulmetro.co.kr

전화 02-6311-9081 전송 02-6311-4288 / apex2002@smrt.co.kr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